완도군의회 공고 제2026 - 35호

완도군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「완도군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6년 11월 10일

완 도 군 의 회 의 장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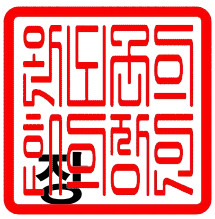

1. 조 례 명: 완도군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2. 발 의 자: 김재현 의원

3. 개정이유

○ 노인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조례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○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 ~ 제4조)

○ 완도군 노인교육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○ 노인교육 사업(안 제6조)

○ 사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(안 제7조 ~ 제8조)

5. 관련법령: 「평생교육법」 제5조

6. 조례안예고기간: 2026. 11. 10. ~ 2026. 11. 14.(5일간).

7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정지원1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

(전화: 061-550-5938, FAX: 061-550-5907)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·전화·팩스·직접방문 등

8. 기타

○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1팀(전화: 061-550-5938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
2. 완도군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안 예고명	완도군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		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	
	주 소			
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				

「완도군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제 출 자 (서명 또는 인)

완도군의회의장 귀하

완도군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학습 기회 확대와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노인교육”이란 완도군에 주소를 둔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하며, 디지털생활교육을 포함한다.
2. “디지털생활교육”이란 노인이 휴대전화, 무인정보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일상생활에서 원활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완도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완도군 노인교육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군수는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완도군 노인교육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

다.

1. 노인교육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

2. 노인교육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

3.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

4.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

5. 그 밖에 군수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노인교육 사업) 군수는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·운영

2. 디지털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·운영

3. 노인교육 전문 인력 양성

4. 노인교육 교재 연구·개발

5.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

6.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

7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사무의 위탁)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재정 지원)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

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 관련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고 **관계 법령 발췌**

평생교육법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삭제

③ 삭제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·시설·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.